○○○ 종합감사 결과

2022. 04. 22.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

○○○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기　　간 : 2022. 04. 18. ~ 04. 22.(5일간)

○ 대　　상 : ○○○

○ 감사범위 : 2019. 05. 0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6명(감사정보담당관 외 5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운영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발생 등

Ⅱ. 감사결과

○ 행정상

(단위 : 건)

계	본 처 본			현지처분		비 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 의	
23	7	12		4		

○ 재정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회 수	추징·부과	감 액	지 급
계	760	760	0	0	0
본 처 분	727	727			
현지처분	33	33			

○ 신분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 계	주 의	비 고

○ 지적사항 총괄

1)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천원】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신 분 상		행 정 상			재 정 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징수	감액
계	**19건**	**0**	**0**	**7**	**12**	**0**	**727**	**727**	**0**
1	이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시 보고 소홀				1				
2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 소홀			1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				
4	관용차량 관리 소홀				1				
5	물품·용역계약 대가의 지급 소홀				1				
6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1				
7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1				
8	상록회비 원천징수동의서 미징구				1				
9	이장수당 지급 소홀				1				
10	준공(물품) 검수 소홀				1				
11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1			80	80	
12	수입인지(증지) 매입 소홀			1			60	60	
13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1					
14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1				
15	장애인등록증 회수업무 소홀			1					
16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금 불입 지연				1				
17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업무 소홀			1					
18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1			587	587	
19	계약심사 업무처리 소홀				1				

2)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천원】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신 분 상		행 정 상			재 정 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징수	감액
계	**4건**	**0**	**0**	**4**	**0**	**0**	**33**	**33**	**0**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1			3	3	
2	복무관리 소홀			1					
3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1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입인지 매입 소홀			1			30	30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이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시 보고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이장 임명 현황

연번	마을명	주　　소	성　명	임 명 일	변동사유	비고
1	△△△리	○○○ ☆☆☆☆ 80-35	◇◇◇	2020.01.01.	임기만료(신임)	
2	△△△리	○○○ ☆☆☆☆ 20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3	△△△리	○○○ ☆☆☆☆ 18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4	△△△리	○○○ ☆☆☆☆ 61-21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5	△△△리	○○○ ☆☆☆ 13	◇◇◇	2020.01.01.	임기만료(신임)	
6	△△△리	○○○ ☆☆☆☆ 14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7	△△△리	○○○ ☆☆☆☆ 140-24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8	△△△리	○○○ ☆☆☆☆ 6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9	△△△리	○○○ ☆☆☆☆☆ 50-21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10	△△△리	○○○ ☆☆☆☆☆☆ 10-7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11	△△리	○○○ ☆☆☆ 100-1	◇◇◇	2020.01.01.	임기만료(신임)	
12	△△△리	○○○ ☆☆☆☆ 763	◇◇◇	2020.01.01.	임기만료(신임)	
13	△△△리	○○○ ☆☆☆☆ 43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14	△△△리	○○○ ☆☆☆ 26-1	◇◇◇	2020.01.01.	임기만료(신임)	
15	△△△리	○○○ ☆☆☆ 253-9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16	△△리	○○○ ☆☆☆ 373-5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17	△△리	○○○ ☆☆☆ 157-6	◇◇◇	2020.01.01.	임기만료(신임)	
18	△△△리	○○○ ☆☆☆☆ 36-5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19	△△△리	○○○ ☆☆☆☆ 34-3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20	△△리	○○○ ☆☆☆ 16-1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21	△△△리	○○○ ☆☆☆☆☆ 77	◇◇◇	2020.01.01.	임기만료(재임)	

나. 위법·부당내용

○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 ① 이통장은 주민총회 (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한 사람을 읍장 · 면장 · 동장(이하 “읍면동장” 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규약 또는 관습적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리 · 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주민총회에서 이통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통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④ 이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 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⑤ 이장·통장선정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선정 한다. (개정 2017.11.15.) 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4조(이장 · 통장선정심의회)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해당 읍 · 면 · 동에 이장 · 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5.)

1. 제3조제5항에 따른 이통장 후보자에 관한 심의 (신설 2017.11.15.)
2. 제3조제6항에 따라 이통장 적격자 심의 (신설 2017.11.15.)
3. 제6조 해임에 관한 심의 (신설 2017.11.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기능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5.)

○ 제9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이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장의 임명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현황

년도별	대　　상	내　　용	공개기간	비고
2020	제11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8명	주요 인적사항	2020.01.31.~02.17.	
2021	제1기 ○○○ 주민자치위원 25명	“	2021.01.26.~02.15.	
2022	제1기 ○○○ 주민자치위원(추가) 8명	“	미　공　개	

나. 위법・부당내용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이장・통장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까지 연임 할 수 있다. ⑥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체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마지막 날까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주민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2020년과 2021년에는 1월 마지막 날을 경과하여 공개하였고, 2022년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미 공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2022년 제1기 ○○○ 주민자치위원(추가)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조치 하시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현황

신청일자 발급일자	신청인	농지소재지		취득면적 (㎡)	초과면적 (㎡)	비 고
		리·동	번지			
2020.09.28. 2020.09.28.	◇◇◇	△△	630-3	1,645	645	소유상한 (1,000㎡) 면적초과
2021.07.23. 2021.07.27.	◇◇◇	△△	256-1, 254-1	2,687	1,687	
2021.11.25. 2021.11.27.	◇◇◇	△△	254-13, 254-7	1,032	32	
2020.05.08. 2020.05.12.	◇◇◇ ◇◇◇	△△	229, 230-4	876	-	농업경영 목적발급
2021.03.22. 2021.03.23.	◇◇◇	△△	131-6	476	-	
2021.09.09. 2021.09.10.	◇◇◇ ◇◇◇	△△	47,48	785	-	
2021.10.08. 2021.10.13.	◇◇◇	△△	289-1	596.5	-	
2021.10.08. 2021.10.13.	◇◇◇	△△	289-1	596.5	-	

나. 위법·부당 내용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1천㎡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또한 「농지법」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의 합이 1천㎡ 초과인 3건을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고, 1천㎡ 미만 6건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신청한 8건에 대하여 서류 보완없이 발급하였고, 농업경영으로 신청한 10건에 대하여 각각 농지전용 8건, 시험용 2건으로 발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신청인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다수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농지법」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차량정비대장 미입력 현황

정비내역				정비대장 등록여부	비고
지급일자	내　　용	사 용 처	금 액(원)		
19건					
2019.03.26.	산불 진화 관용차량(**너 ****) 와이퍼 교체	◎◎타이어	10,000	부	
2019.03.26.	산불 관용차량(**너 ****) 수리	◎◎◎◎◎기계	324,500	부	
2019.03.26.	관용차량(**더 ****) 수리	◎◎모터스	30,000	부	
2019.12.24.	환경미화원 관용차량(**마 ****) 정비(엔진오일 등 교체) 결의	◎◎모터스	80,000	부	
2020.02.07.	관용차량(**더 ****) 수리 결의	◎◎◎◎◎공업(주)	250,000	부	
2020.03.24.	관용차량(**더 ****) 수리 결의 (약제 살포기)	◎◎◎◎기계	40,000	부	
2020.03.24.	관용차량(**더 ****) 수리 약제 분무기 수리	◎◎◎◎기계	33,000	부	
2020.05.13.	관용차량(**더 ****) 수리 (외케치 교환)	◎◎모터스	55,000	부	
2020.08.12.	관용차량(**마 **** 청소차량) 썬바이처 장착	◎◎◎◎◎용품	35,000	부	
2020.09.09.	청소 업무용 관용차량 (**마 **** 봉고트럭) 수리	◎◎◎◎공업사	275,000	부	
2020.10.12.	관용차량(**마 ****) 타이어 펑크 수리	◎◎◎독크	11,000	부	

2020.11.11.	관용차량(**마 ****) 타이어 펑크 수리	◎◎모터스	10,000	부	
2021.08.11.	관용차량(**나****) 정비	◎◎◎◎자동차정비	58,600	부	
2021.09.24.	관용차량(**나****) 타이어 교체	◎◎◎세상	281,600	부	
2021.10.12.	관용차량(**마 ****) 수리	◎◎◎◎◎공업(주)	1,090,540	부	
2021.12.30.	관용차량(**나****) 타이어 교체	◎◎◎세상	224,400	부	
2021.12.22.	업무추진용 관용차량(**더 ****) 수리(디스크삼발이)	◎◎◎독크	350,000	부	
2022.03.10.	관용차량(**마 **** 청소차량) 엔진오일 교환	◎◎◎독크	70,000	부	
2022.03.23.	관용차량(**마 ****) 라이트 전구 교체	◎◎◎◎◎공업(주)	10,000	부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제8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3. 차량유류수불대장 4. 차량운행일지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에 대하여 차량수리 후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 등 차량정비에 대한 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라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기록관리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물품·용역 계약 대가의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대가지급 현황

일련번호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천원)	대　가 청구일	대　가 지급일	지　급 기　한	지연일	비고
	12건							
1	2019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실시설계용역(1차)	㈜◎◎엔지니어링	8,100	2019/9/16	2019/9/25	2019/9/20	3	주말제외
2	○○ 색동수국거리 벽화 조성 공사	◎◎◎◎문화연구소	18,881	2021/5/7	2021/5/17	2021/5/13	2	주말제외
3	○○색동수국정원내 목교 보수공사	주식회사 ◎◎◎◎◎	6,820	2021/11/30	2021/12/21	2021/12/6	11	주말제외
4	2021년 ○○○ 법정도로 풀깎기사업	◎◎식물원조경(주)	4,977	2021/12/3	2021/12/17	2021/12/9	6	주말제외
5	○○ △△△ ○○천 일원 수국 가로화단 관수시설 설치공사	◎◎농자재	4,900	2021/4/12	2021/4/26	2021/4/16	6	주말제외
6	△△△ 농로포장공사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앤레미콘	3,697	2019/04/13	2019/4/29	2019.4/19	6	주말제외
7	△△△△(△△△△) 농로포장공사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앤레미콘	2,396	2019/4/30	2019/5/10	2019/5/7	3	주말제외
8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행결의(재배정)	◎◎◎◎인테리어	1,930	2019/7/12	2019/7/19	2019/7/18	1	주말제외
9	○○○ 자율방재단 창고시설(컨테이너) 구입결의	㈜◎◎이엔씨	14,000	2020/11/19	2020/11/30	2020/11/25	3	주말제외
10	관내 야외 체육시설 수리, 교체	◎◎스포츠	5,258	2021/5/28	2021/6/11	2021/6/3	6	주말제외
11	○○○ 주민자치회 사무실 구성을 위한 집기 구입 결의	◎◎◎가구	3,625	2021/5/21	2021/6/1	2021/5/27	6	주말제외
12	△△△ 경지정리지구 관급자재(부력제수문) 구입	주식회사 ◎◎	2,738	2021/5/26	2021/6/3	2021/6/1	3	주말제외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 물품 ·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 아무런 사유 없이 2019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실시설계용역(1차) 외 11건에 대하여 위 대가지급 현황과 같이 **최소 1일 최대 11일 대가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하자검사 현황

구 분		정기 하자검사			만료검사				비 고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기 한 미준수	
계		600	490	110	91	23	68	14	
2019년	상반기	130	130	0	20	9	11	0	
	하반기	110	0	110	30	14	16	14	
2020년	상반기	167	167	0	21	0	21	0	
	하반기	193	193	0	20	0	20	0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장 미작성으로 대상 수 산정 불가							2019~2021 발주공사
	하반기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691건(정기 600건, 만료 91건)에 대하여 정기 110건, 만료 68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만료 14건에 대하여 검사 기한을 미준수 하였음.

○ 또한,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연도 하자검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검사 대상 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장은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하자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

지출 사유	지출금액(원)	지급일자	명단여부	비 고
3건	1,650,000			(지급번호)
2019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급식	600,000	2019.06.28.	부	435
기간제근로자 노고 격려 오찬 제공	530,000	2020.12.10.	부	863
부서원 격려를 위한 오찬 제공 (◉◉◉◉◉)	520,000	2020.12.23.	부	883
부서원 격려를 위한 오찬 제공 (◉◉◉◉◉)		2020.12.23.		882
부서원 격려를 위한 오찬 제공 (◉◉◉◉◉)		2020.12.23.		881
부서원 격려를 위한 오찬 제공 (◉◉◉)		2020.12.23.		884

※ 2020.12.23. 부서원 격려를 위한 오찬 제공은 팀별 별도 추진하였으나 품의 공문 및 동일한 지급일자로 보아 동일 1건으로 봄.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기재한 명단을 증빙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상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미징구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원천징수 동의서 징구 현황

대상년도	원천징수 여부	동의서 징구 여부	비 고
2019	여	부	
2020	여	부	
2021	여	부	
2022	여	부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월액여비 등 수당에서 상록회비를 공제 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이장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이장기본수당 지급일 부적정

연번	지급일자	공무원 보수일	지연일 (조기지급일)	비고
1	2019.01.24.	2019.01.18.	5	
2	2019.02.21.	2019.02.20.	1	
3	2019.03.25.	2019.03.20.	4	
4	2019.04.24.	2019.04.19.	4	
5	2019.05.21.	2019.05.20.	1	
6	2021.06.17.	2021.06.18.	-1	
7	2021.07.22.	2021.07.20.	2	
8	2021.09.16.	2021.09.17.	-1	
9	2021.12.21.	2021.12.20.	1	
10	2022.02.17.	2022.02.18.	-1	
11	2022.03.17.	2022.03.18.	-1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통·리·반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장기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장기본수당 39건 중 4건은 1일 조기 지급하였으며, 7건은 최소 1일, 최대 5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준공(물품) 검수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준공(물품)검수 현황

일련번호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천원)	준공(납품)계 제출일	검수일	검수기한	지연일	비고
	1건							
1	△△△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 주식회사	8,400	2020.8.4.	2020.8.18.	2020.8.17.	1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아무런 사유 없이 △△△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건에 대하여 위 검수 현황과 같이 **검수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80,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지역개발채권 매입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대　가 지급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공급가액	적정 금액	매입 금액	과소 매입 금액	도급자	비고
합 계	5건	41,226,000	40,033,635	690,000	610,000	80,000		명령 번호
△△△리 용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19.12.26.	1,440,000	1,309,090	30,000	0	30,000	㈜☆☆ 산업개발	811
202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본예산 1차) 실시설계용역	2021.3.24.	9,300,000	8,454,545	210,000	200,000	10,000	☆☆ 엔지니어링(합)	141
○○ 색동수국정원 식재용 꽃묘(수국) 구입 결의	2019.5.27.	19,760,000	19,760,000	295,000	290,000	5,000	☆☆농원	312
○○ 색동수국정원 식재용 꽃묘(엔들레스 써머 외 1종) 구입 결의	2019.5.27.	8,350,000	8,350,000	125,000	120,000	5,000	☆☆☆☆농원	310
○○ 색동수국정원내 묘목 고정지지대 설치를 위한 지주목 구입 결의	2019.11.5.	2,376,000	2,160,000	30,000	0	30,000	☆☆제재소	662

나. 위법 · 부당내용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1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금공급 가액의 2.5/100를,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인 경우에는 대금공급 가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리 용수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외 4건(총 공급금액 40,033,635)을 계약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 80,000원을 과소 매입**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의 규정 및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80천원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수입인지(증지) 매입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60,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수입인지(증지)

(단위 : 천원)

사　업　명	대　가 지급일	계약금액	적정인지 금액 / 적정증지 금액	징수금액 / 징수금액	미징수 금액	도급자	비 고 (명령번호)
합 계		173,507	250	190	60		
○○○ △△△리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2021/8/12	11,200	20	20	0	주식회사 ☆☆☆☆ 연구소	110
			10	0	1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리 농로포장공사	2021/12/9	10,342	20	0	20	㈜☆☆	713
			10	0	10		
○○ 근로자 복지회관 운동용품 구입 결의	2019/5/23	19,709	20	20	0	☆☆☆☆☆ 상사	296
			10	0	10		
○○ 색동수국길 조성사업 관급자재(수국 등)	2020/5/8	132,256	150	150	0	☆☆☆☆ 주식회사	45
			10	0	10		

나. 위법 · 부당내용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의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4에 따라 1천만원~3천만원의 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 2만원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경우 공주시 수입증지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리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외 3건(총 공급금액 173,507천원)을 계약 체결하면서 정부 수입인지 20천원, 공주시 수입증지 40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의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4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20천원,**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에 따라 **공주시 수입증지 40천원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점검 현황

* 대상기간 : 2019. 4. 1. ~ 현재

연번	급여 관리 대상자		급여 관리자		내용	비고
	유　형	성　명	성　명	관　계 (지정일)		
1	기타 (거동불편)	◇◇◇	◇◇◇	2촌 이내 직계존비속 (2012.03.26.)	· 점검서류 미비 : 2021년 상, 하반기	
2	지적장애	◇◇◇	◇◇◇	2촌 이내 직계존비속 (2017.11.28.)	· 점검서류 미비 : 2021년 하반기 · 점검 미실시 : 2021년 하반기	'22.01.06 .점검제외
3	18세 미만 아동	◇◇◇	◇◇◇	친인척 (2021.03.23.)	· 점검 미실시 : 2020년 상반기	'20.07.01 .점검제외
4	발달장애인	◇◇◇	◇◇◇	기타 (2014.11.25.)	· 점검서류 미비 : 2021년 상, 하반기	'22.03.0 3.전출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 통합업무 지침 및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하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확인·점검**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 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입·출금내역을 점검하고 급여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타목적에 사용되거나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 등 4명에 대해 급여 점검 및 확인을 2회 누락하였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점검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통장 입·출금내역 및 영수증 등의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장은

○ **급여 관리 실태 확인·점검을 하였으나 점검 자료가 미비한 3명에 대해 이를 보완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실태 확인 및 점검을 일정에 따라 철저히 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신청기간	위임장 기재사항 누락	인감 발급번호 미기재	비고
2019. 4. 1. ~ 감사일 현재	166건	신청기간 전체	

나. 위법・부당내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위임장은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동의서에 위임날짜, 발급용도,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임장 166건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위임장 및 동의서에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의 위임날짜, 발급용도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하고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장애인 자격상실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 대상기간 : 2019. 4. 1. ~ 현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　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1	◇◇◇	######	사망말소	20190609	부	미송달	
2	◇◇◇	######	사망말소	20190821	부	미송달	
3	◇◇◇	######	사망말소	20190913	부	미송달	
4	◇◇◇	######	사망말소	20191006	부	미송달	
5	◇◇◇	######	사망말소	20191013	부	미송달	
6	◇◇◇	######	사망말소	20191021	부	미송달	
7	◇◇◇	######	사망말소	20191115	부	미송달	
8	◇◇◇	######	사망말소	20191120	부	미송달	
9	◇◇◇	######	사망말소	20191122	부	미송달	
10	◇◇◇	######	사망말소	20191231	부	미송달	
11	◇◇◇	######	사망말소	20200103	부	미송달	
12	◇◇◇	######	사망말소	20200120	부	미송달	
13	◇◇◇	######	사망의심	20200217	부	미송달	
14	◇◇◇	######	사망말소	20200401	부	미송달	
15	◇◇◇	######	사망말소	20200417	부	미송달	
16	◇◇◇	######	사망말소	20200510	부	미송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 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17	◇◇◇	######	사망말소	20200602	부	미송달	
18	◇◇◇	######	사망말소	20200709	부	미송달	
19	◇◇◇	######	사망의심	20200715	부	미송달	
20	◇◇◇	######	사망말소	20200803	부	미송달	
21	◇◇◇	######	사망말소	20201001	부	미송달	
22	◇◇◇	######	사망말소	20201007	부	미송달	
23	◇◇◇	######	사망말소	20201029	부	미송달	
24	◇◇◇	######	사망말소	20201106	부	미송달	
25	◇◇◇	######	사망말소	20201120	부	미송달	
26	◇◇◇	######	사망말소	20201124	부	미송달	
27	◇◇◇	######	사망말소	20201204	부	미송달	
28	◇◇◇	######	사망말소	20201213	부	미송달	
29	◇◇◇	######	사망말소	20201218	부	미송달	
30	◇◇◇	######	사망말소	20210101	부	미송달	
31	◇◇◇	######	사망말소	20210115	부	미송달	
32	◇◇◇	######	사망의심	20210316	부	미송달	
33	◇◇◇	######	사망의심	20210318	부	미송달	
34	◇◇◇	######	사망의심	20210325	부	미송달	
35	◇◇◇	######	사망말소	20210407	부	미송달	
36	◇◇◇	######	사망말소	20210516	부	미송달	
37	◇◇◇	######	사망의심	20210518	부	미송달	
38	◇◇◇	######	사망말소	20210619	부	미송달	
39	◇◇◇	######	사망의심	20210628	부	미송달	
40	◇◇◇	######	사망말소	20210715	부	미송달	
41	◇◇◇	######	사망말소	20210722	부	미송달	
42	◇◇◇	######	사망말소	20210724	부	미송달	
43	◇◇◇	######	사망말소	20211013	부	미송달	
44	◇◇◇	######	사망말소	20211019	부	미송달	
45	◇◇◇	######	사망말소	20211022	부	미송달	
46	◇◇◇	######	사망말소	20211109	부	미송달	
47	◇◇◇	######	사망말소	20211117	부	미송달	
48	◇◇◇	######	사망말소	20211123	부	미송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 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49	◇◇◇	######	사망말소	20211203	부	미송달	
50	◇◇◇	######	사망말소	20211230	부	미송달	
51	◇◇◇	######	사망말소	20220103	부	미송달	
52	◇◇◇	######	사망말소	20220119	부	미송달	
53	◇◇◇	######	사망말소	20220123	부	미송달	
54	◇◇◇	######	사망말소	20220124	부	미송달	
55	◇◇◇	######	사망말소	20220209	부	미송달	
56	◇◇◇	######	사망말소	20220220	부	미송달	
57	◇◇◇	######	사망말소	20220225	부	미송달	
58	◇◇◇	######	사망말소	20220312	부	미송달	
59	◇◇◇	######	사망말소	20220316	부	미송달	
60	◇◇◇	######	사망말소	20220319	부	미송달	
61	◇◇◇	######	사망말소	20220325	부	미송달	
62	◇◇◇	######	사망말소	20190419	부	미송달	
63	◇◇◇	######	사망말소	20190617	부	미송달	

나.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 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된 63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미회수 하였으며,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발송 하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된 63명에 대하여 즉지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금 불입 지연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대상기간	구　분	지연일수 / 건	지연불입액	비고
2019.04.12. ~2022.03.31.	계	56일 / 20건	186,500원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31일 / 16건	173,500원	
	학교민원(어디서나 민원)	25일 / 4건	13,000원	

나. 위법·부당내용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12조 제2항에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스템에 따른 학교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의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처리기관에 송금하고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 4. 12.부터 현재까지 제증명 등 수수료 총 186,500원에 대해 최소 2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총 56일을 지연하여 불입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제증명 등의 수입금 불입 처리를 지연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신청기간	면제사유 등 기재 누락	수입증지 소인 누락	이전 증 반납 미확인	비고
2019. 4. 1. ~ 감사일 현재	20건	17건	다수	

나.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발급신청서[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에 **면제대상 해당사항에 체크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동의를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이전 증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 면제인 경우

1) 보안 미적용 증(2006.11.01.이전 발급된 증)의 재발급(편람 p.148)

2) 지문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편람 p.152)

○ 또한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징수하여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를 수리하면서 면제사유 기재 및 증명자료가 없어 수수료 면제 사유를 알 수 없는 건이 20건,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이 누락 17건, 이전 증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면제 대상이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건이 다수 등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신청서에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이 누락된 17건을 보완하시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재발급신청서 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해당사유 기재(또는 증명자료 제출) 및 이전 증 반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시고 신청서에 수수료를 소인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587,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사내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계약	정산				
합 계	2건	21,700	21,113	587			
△△△리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PC박스 암거 L=4m	11,700	11,200	500	2019.04.04. ~2019.05.01.	가도 미설치	☆☆건설(주) ◇◇◇
△△리 농로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444㎡	10,000	9,913	87	2019.06.05. ~2019.06.27.	줄눈(프라이머) 미시공	☆☆건설(자)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상기와 같이「△△△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외 1건」을 추진하면서 줄눈(프라이머)을 미시공하는등의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 후 준공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587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에 따라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준공)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2건의 합계 587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약심사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물품구입현황

구 입 명	구입내용	금 액 (천원)	구입결의 시 행 일	지적사항	비고
합 계	2건				
○○ 색동수국정원 그늘막쉼터 조성을 위한 관급자재(그늘막) 구입	그늘막 13개소	21,970	2020.05.06	계약심사 절차누락	
○○ 색동수국정원 및 유구천 솔바람길 관급자재(표지석) 제작 · 구입	표지석 2개소	22,000	2020.04.27	계약심사 절차누락	

나. 위법·부당사항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 우리시는「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발주부서와 계약부서는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대상사업)와 제4조(계약심사제외사업)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상기와 같이 「○○ 색동수국정원 그늘막쉼터 조성을 위한 관급자재(그늘막)외 1건」을 구입하면서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별지 제1호 ~ 제5호」 서식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심사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대상사업)와 제4조(계약심사제외사업)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